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박성연 의원 외 23명
- 나. 의안번호: 제590호
- 다. 발의일자: 2023. 3. 28.
- 라. 회부일자: 2023. 4. 3.

2. 제 안 사 유

-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소음기·소음덮개 임의 제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5. 검토 의견

-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차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¹⁾로 보고되고 있음.
- 민원의 대부분은 소음기와 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상에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음²⁾.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맞춰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 없음.
또한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주가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1)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1년에 9,539건이고, 정부가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98.4%(4,428건)는 구두경고로 끝냈음.

(신문기사 “이륜차 단속 나선 서울시, 솜방망이 처벌에 실효성 가뭏”, 2023.02.21., Le Desk)

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사항>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시행 2023.7.1.] [법률 제19150호, 2022.12.30., 일부개정]

- 다만, 안 제14조의2제2항은 포상금을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 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나, 현재 동 조례의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는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중 운행차의 수시 점검과 개선·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등의 사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이를 구청장의 업무로 위임하고 있음.

향후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업무 또한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여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통소음 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 정책과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운행차의 수시점검 -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제 36조 「소음진동관리법」제 38조	구청장
생활 환경과	소음·진동 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소음진동관리법」제 60조	구청장